



도 3.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구



도 4.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8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93호(2005.09.29.)로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존치관리구역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비)]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	900,164.8	-	900,164.8	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IV. 결정 또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재정비)

V.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신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번지 일대	24,714	-	24,714	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번지 일대	24,714	◦ 구역 변경 없이 단순명칭 변경 (신촌지구단위계획구역 → 북아현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는 행정구역 상 신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 변경(2008.2.5.)시 기존의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명칭을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714	-	24,714	100.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5	-	2,685	10.9	이면도로
	준주거지역	18,414	-	18,414	74.5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3,615	-	3,615	14.6	

2)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	방화지구	북아현동 135-17 ~ 창천동 18-42	노선변 6~12m (12m)	건고시 제727호 (63.12.13.)	신촌로변

※ () 구역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144	북아현동 240-2	대현동 65-16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중로	3	(2)	12	집산	261	북아현동 221-2	북아현동 240-2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중로	3	(3)	12	집산	287	북아현동 153-25	북아현동 220-11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147	북아현동 154-4	북아현동 148-19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소로	2	(1)	8	국지	37	북아현동 238-22	북아현동 238-1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소로	2	(2)	8	국지	33	북아현동 220-32	북아현동 220-1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소로	2	(3)	8	국지	33	북아현동 156-28	북아현동 156-1	일반 도로	-	서고제38호 (08.2.5)	-
폐지	소로	2	(5)	8	특수	41	북아현동 251-39	북아현동 251-11	보행 전용	-	서고제38호 (08.2.5)	-
기정	소로	3	(1)	4	특수	41	북아현동 251-45	북아현동 251-1	보행 전용	-	서고제38호 (08.2.5)	-
변경	소로	3	(1)	4	특수	21	북아현동 251-45	북아현동 251-28	보행 전용	-	서고제38호 (08.2.5)	연장감소 (20m)
신설	소로	3	(A)	4	국지	20	북아현동 251-28	북아현동 251-1	일반 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5)	-	◦ 도로 폐지	◦ 단차 17m의 급경사 지형에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는 도로개설 효과 및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고 주민공공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 건축 물의 건축을 통해 지역 주민 요구사항 (경로당, 주민공공시설 및 엘 리베이터 등 설치)을 수용하고자 함
소로 3-(1)	소로 3-(1)	◦ 도로 연장 감소	◦ 신촌로27길(이면도로)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구간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로3-(1) 특수도로 연장축소 및 일반도로 신설(소로3-A)
소로 3-(1)	소로 3-(A)	◦ 도로 신설	◦ 신촌로27길(이면도로)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구간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로3-(1)특수도로의 일부 축소 및 일반도로 신설

(2) 주차장(변경없음)

(3) 철도(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서대문구 북아현동 251-99번지 일원	-	증)332.1	332.1	-	-

■ 사회복지시설 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신설 증) 332.1㎡	◦ 공공성 향상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 신설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아현역 주변	2,500(6BL)	적정개발규모 유도 (준주거지역 : 300~500㎡ 근린상업지역 : 800㎡)
신촌로변(이대전철역 동측)	2,000(1~5BL)	

※ 최대개발규모(적정개발규모)를 기준에 초과하는 대지는 적용 제외

2)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본방향

기 정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계획	공동건축 계획(획지단위 공동개발)	획지계획	◦ 획지계획 해지(블록단위개발 → 개별건축행위)
공동건축 (권장)	◦ 공동건축이 지정된 대지는 계획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 ◦ 공동건축이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는 최 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을 허용 ◦ 공동건축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획지에 대하여 추후 운영과정에서 공동건축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개별획지는 각각 공동건축 내 규제내용과 동일한 적용 ◦ 공동건축이 권장된 대지는 계획 되어진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건축 ◦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획지 간 공동 건 축 가능(획지선 변경없음)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과소필지(90㎡ 이하)로서 부정형/세장형(단변과 장변의 비가 1:3이상)필지 ◦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 및 맹지인 경우 ◦ 건축한계선, 건축후퇴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필지
		공동개발 (권장)	◦ 지역여건(역세권 및 간선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규모 유도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최소개발규모(주거지역:90㎡, 상업지역:150㎡) 이상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인센티브 연계 적극 활용 ◦ 부정형, 세장형 필지는 불허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개발(지정)을 변경할 수 있음

■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가구(획지) 번호	면 적(㎡)	획지계획(변경)		비 고
				위 치	면 적(㎡)	
폐 지	-	68 ~ 73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 기정 블록단위 획지계획 결정 폐지

■ 획지계획 폐지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획지계획 폐지(6가구)	◦ 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 폐지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가구		필지		공동개발	비고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정	68	2,448	북아현동	154-2	76.4 ◦ 공동건축지정 : 154-3 ◦ 공동건축권장 : 154-1,-4,-5,-6,-7,-8,-9,-11,-12,-33,-34, -35,-36	-
				154-3	55.9 ◦ 공동건축지정 : 154-2 ◦ 공동건축권장 : 154-1,-4,-5,-6,-7,-8,-9,-11,-12,-33, -34,-35,-36	-
				154-1	95.2 ◦ 공동건축지정 : 154-4,-5,-6,-7,-8,-9,-11,-12,-33,-34, -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4	46.7 ◦ 공동건축지정 : 154-1,-5,-6,-7,-8,-9,-11,-12,-33,-34, -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5	49 ◦ 공동건축지정 : 154-1,-4,-6,-7,-8,-9,-11,-12,-33,-34, -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6	33 ◦ 공동건축지정 : 154-1,-4,-5,-7,-8,-9,-11,-12,-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7	27.4 ◦ 공동건축지정 : 154-1,-4,-5,-6,-8,-9,-11,-12,-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8	78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9,-11,-12,-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9	124.6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11,-12,-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11	131.6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9,-12,-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12	33.1 ◦ 공동건축지정 : 154-1,-2,-4,-5,-6,-7,-8,-9,-33,-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33	107.4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9,-12,-34,-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3-34	69.4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9,-12,-33,-35,-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35	61.2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9,-12,-33,-34,-36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36	103.8 ◦ 공동건축지정 : 154-1,-4,-5,-6,-7,-8,-9,-12,-33,-34,-35 ◦ 공동건축권장 : 154-2,-3	-
				154-13	36.7 ◦ 공동건축지정 : 154-14,-15,-16,-17,-18,-19, -20,-21,-22,-23,-24,-25,-26,-27,-28,-29,-31,-32 ◦ 공동건축권장 : 154-30	-
				154-14	36 ◦ 공동건축지정 : 154-13,-15,-16,-17,-18,-19, -20,-21,-22,-23,-24,-25,-26,-27,-28,-29,-31,-32 ◦ 공동건축권장 : 154-30	-
				154-15	105.8 ◦ 공동건축지정 : 154-13,-14,-16,-17,-18,-19, -20,-21,-22,-23,-24,-25,-26,-27,-28,-29,-31,-32 ◦ 공동건축권장 : 154-30	-

				154-16	97.5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 공동건축권장 : 154-30	-
				154-17	81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18	14.9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19	15.4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0	24.5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1	103.5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2	81.3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3	114.7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4	39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5	37.4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6	52.9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7	43.3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8	94.2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29	106.1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공동건축권장 : 154-30, -31, -32	-
				154-31	80.7	◦ 공동건축지정 : 154-32 ◦ 공동건축권장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
				154-32	83.3	◦ 공동건축지정 : 154-31 ◦ 공동건축권장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
				154-30	107.1	◦ 공동건축지정 : 15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
기정	69	3,435.9	북아현동	156-1	109.8	◦ 공동건축지정 : 156-2, -3, -25, -26, -27, -39 ◦ 공동건축권장 : 156-28, -29, -30, -31	-
				156-2	84.6	◦ 공동건축지정 : 156-1, -3, -25, -26, -27, -39 ◦ 공동건축권장 : 156-28, -29, -30, -31	-
				156-3	55.9	◦ 공동건축지정 : 156-1, -2, -25, -26, -27, -39 ◦ 공동건축권장 : 156-28, -29, -30, -31	-
				156-25	55.2	◦ 공동건축지정 : 156-1, -2, -3, -26, -27, -39 ◦ 공동건축권장 : 156-28, -29, -30, -31	-

			156-26	26.5	◦ 공동건축지정 : 156-1,-2,-3,-25,-27,-39 ◦ 공동건축권장 : 156-28,-29,-30,-31	-
			156-27	78.7	◦ 공동건축지정 : 156-1,-2,-3,-25,-26,-39 ◦ 공동건축권장 : 156-28,-29,-30,-31	-
			156-39	64.1	◦ 공동건축지정 : 156-1,-2,-3,-25,-26,-27 ◦ 공동건축권장 : 156-28,-29,-30,-31	-
			156-4	72.4	◦ 공동건축지정 : 156-20,-21,-24,-40,-51,-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20	175.4	◦ 공동건축지정 : 156-4,-21,-24,-40,-51,-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21	182.5	◦ 공동건축지정 : 156-4,-20,-24,-40,-51,-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24	56.5	◦ 공동건축지정 : 156-4,-20,-21,-40,-51,-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40	43.6	◦ 공동건축지정 : 156-4,-20,-21,-24,-51,-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51	23.5	◦ 공동건축지정 : 156-4,-20,-21,-24,-40,-52,-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52	16.4	◦ 공동건축지정 : 156-4,-20,-21,-24,-40,-51,-53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156-53	3.3	◦ 공동건축지정 : 156-4,-20,-21,-24,-40,-51,-52 ◦ 공동건축권장 : 156-19,-22,-23,-32,-33,-34	-
			251-11	77.7	◦ 공동건축지정 : 251-11,10,9,12	-
			251-8	103.5	◦ 공동건축지정 : 251-9,10,11,12 ◦ 공동건축권장 : 251-14	-
			156-10	194.7	◦ 공동건축지정 : 156-7,-8,-11,-12,-13,-14,-15,-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1	65.8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2,-13,-14,-15,-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2	67.1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3,-14,-15,-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3	65.5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4,-15,-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4	82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3,-15,-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5	61.2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3,-14,-16,-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6	52.2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3,-14,-15,-17,-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7	59.8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3,-14,-15,-16,-18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8	57.5	◦ 공동건축지정 : 156-7,-8,-10,-11,-12,-13,-14,-15,-16,-17 ◦ 공동건축권장 : 156-35,-36,-37	-
			156-19	112.4	◦ 공동건축지정 : 156-22,-23,-32,-33,-34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22	120	◦ 공동건축지정 : 156-19,-23,-32,-33,-34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23	81	◦ 공동건축지정 : 156-19,-22,-32,-33,-34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32	105.9	◦ 공동건축지정 : 156-19,-22,-23,-33,-34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33	59.5	◦ 공동건축지정 : 156-19,-22,-23,-32,-34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34	121.6	◦ 공동건축지정 : 156-19,-22,-23,-32,-33 ◦ 공동건축권장 : 156-4,-20,-21,-24,-40,-51,-52,-53	-
			156-35	156	◦ 공동건축지정 : 156-36,-37 ◦ 공동건축권장 : 156-7,-8,-10,-11,-12,-13,-14,-15,-16,-17,-18	-

기정	70	3,625.9	북아현동	156-36	116.6	◦ 공동건축지정 : 156-35,-37 ◦ 공동건축권장 : 156-7,-8,-10,-11,-12,-13,-14,-15,-16,-17,-18	-
				156-37	89.9	◦ 공동건축지정 : 156-35,-36 ◦ 공동건축권장 : 156-7,-8,-10,-11,-12,-13,-14,-15,-16,-17,-18	-
				156-28	150	◦ 공동건축지정 : 156-29,-30,-31 ◦ 공동건축권장 : 156-1,-2,-3,-25,-26,-27,-39	-
				156-29	149.2	◦ 공동건축지정 : 156-28,-30,-31 ◦ 공동건축권장 : 156-1,-2,-3,-25,-26,-27,-39	-
				156-30	27	◦ 공동건축지정 : 156-28,-29,-31 ◦ 공동건축권장 : 156-1,-2,-3,-25,-26,-27,-39	-
				156-31	211.4	◦ 공동건축지정 : 156-28,-29,-30 ◦ 공동건축권장 : 156-1,-2,-3,-25,-26,-27,-39	-
				220-1	83.6	◦ 공동건축지정 : 220-2,-3,-4,-26,-28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47,-36,-38,-39	-
				220-2	86.9	◦ 공동건축지정 : 220-1,-3,-4,-26,-28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36,-38,-39,-47	-
				220-3	47.9	◦ 공동건축지정 : 220-1,-2,-4,-26,-28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36,-38,-39,-47	-
				220-4	46.3	◦ 공동건축지정 : 220-1,-2,-3,-26,-28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36,-38,-39,-47	-
				220-26	132.9	◦ 공동건축지정 : 220-1,-2,-3,-4,-28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36,-38,-39,-47	-
				220-28	157.7	◦ 공동건축지정 : 220-1,-2,-3,-4,-26 ◦ 공동건축권장 : 220-5,-6,-23,-24,-25,-29,-30,-31,-32,-34,-35,-36,-38,-39,-47	-
				220-5	71.1	◦ 공동건축지정 : 220-6,-23,-24,-25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29,-30,-31,-32,-34,-35,-36,-38,-39,-47	-
				220-6	67.8	◦ 공동건축지정 : 220-5,-23,-24,-25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29,-30,-31,-32,-34,-35,-36,-38,-39,-47	-
				220-23	89.3	◦ 공동건축지정 : 220-5,-6,-24,-25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29,-30,-31,-32,-34,-35,-36,-38,-39,-47	-
				220-24	89.3	◦ 공동건축지정 : 5,-6,-23,-25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29,-30,-31,-32,-34,-35,-36,-38,-39,-47	-
				220-25	51.9	◦ 공동건축지정 : 220-5,-6,-23,-24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29,-30,-31,-32,-34,-35,-36,-38,-39,-47	-
				220-36	176.4	◦ 공동건축지정 : 220-38,-39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2,-34,-35,-47	-
				220-38	95.9	◦ 공동건축지정 : 220-36,-39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2,-34,-35,-47	-
				220-39	45.7	◦ 공동건축지정 : 220-36,-38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2,-34,-35,-47	-
				220-7	65.1	◦ 공동건축지정 : 220-8,-20,-21 ◦ 공동건축권장 : 220-9,-10,-11,-12,-15,-16,-14,-43,-46,-48,-61,-18,-19,-22,-40,-41,-42	-
				220-8	63.5	◦ 공동건축지정 : 220-7,-20,-21 ◦ 공동건축권장 : 220-9,-10,-11,-12,-15,-16,-14,-43,-46,-48,-61,-18,-19,-22,-40,-41,-42	-

			220-20	76.4	◦ 공동건축지정 : 220-7,-8,-21 ◦ 공동건축권장 : 220-9,-10,-11,-12,-15,-16,-14,-43,-46,-48,-61,-18,-19,-22,-40,-41,-42	-
			220-21	77.7	◦ 공동건축지정 : 220-7,-8,-20 ◦ 공동건축권장 : 220-9,-10,-11,-12,-15,-16,-14,-43,-46,-48,-61,-18,-19,-22,-40,-41,-42	-
			220-18	57.5	◦ 공동건축지정 : 220-19,-22,-40,-41,-42 ◦ 공동건축권장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19	75.5	◦ 공동건축지정 : 220-18,-22,-40,-41,-42 ◦ 공동건축지정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22	108.8	◦ 공동건축지정 : 220-18,-19,-40,-41,-42 ◦ 공동건축권장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40	63	◦ 공동건축지정 : 220-18,-19,-22,-41,-42 ◦ 공동건축권장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41	62.9	◦ 공동건축지정 : 220-18,-19,-22,-40,-42 ◦ 공동건축권장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42	68.8	◦ 공동건축지정 : 220-18,-19,-22,-40,-41 ◦ 공동건축권장 : 220-7,-8,-10,-21,-9,-10,-11,-12,-15,-16,-14,-43,-46,-48,-61	-
			220-9	70.7	◦ 공동건축지정 : 220-10,-11,-12,-15,-16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0	111.7	◦ 공동건축지정 : 220-9,-11,-12,-15,-16 ◦ 공동건축지정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1	205.3	◦ 공동건축지정 : 220-9,-10,-12,-15,-16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2	48.3	◦ 공동건축지정 : 220-9,-10,-11,-15,-16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5	48.3	◦ 공동건축지정 : 220-9,-10,-11,-12,-16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6	99.8	◦ 공동건축지정 : 220-9,-10,-11,-12,-15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18,-19,-22,-40,-41,-42,-14,-43,-46,-48,-61	-
			220-14	315.9	◦ 공동건축지정 : 220-43,-46,-48,-61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9,-10,-11,-12,-15,-16,-18,-19,-22,-40,-41,-42	-
			220-43	149.1	◦ 공동건축지정 : 220-14,-46,-48,-61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9,-10,-11,-12,-15,-16,-18,-19,-22,-40,-41,-42	-
			220-46	80.3	◦ 공동건축지정 : 220-14,-43,-48,-61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9,-10,-11,-12,-15,-16,-18,-19,-22,-40,-41,-42	-
			220-48	40.2	◦ 공동건축지정 : 220-14,-43,-46,-61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9,-10,-11,-12,-15,-16,-18,-19,-22,-40,-41,-42	-
			220-61	63.2	◦ 공동건축지정 : 220-14,-43,-46,-48 ◦ 공동건축권장 : 220-7,-8,-20,-21,-9,-10,-11,-12,-15,-16,-18,-19,-22,-40,-41,-42	-
			220-29	62.1	◦ 공동건축지정 : 220-30,-31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32,-34,-35,-36,-38,-39,-47	-

기정				220-30	44.3	◦ 공동건축지정 : 220-29,-31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32,-34,-35,-36,-38,-39,-47	-
				220-31	43.3	◦ 공동건축지정 : 220-29,-30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32,-34,-35,-36,-38,-39,-47	-
				220-32	124.2	◦ 공동건축지정 : 220-34,-35,-47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6,-38,-39	-
				220-34	55.2	◦ 공동건축지정 : 220-32,-35,-47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6,-38,-39	-
				220-35	89.1	◦ 공동건축지정 : 220-32,-34,-47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6,-38,-39	-
				220-47	13	◦ 공동건축지정 : 220-32,-34,-35 ◦ 공동건축권장 : 220-1,-2,-3,-4,-26,-28,-5,-6,-23,-24,-25,-29,-30,-31,-36,-38,-39	-
	71	3,210.7	북아현동	221-1	96.2	◦ 공동건축지정 : 221-2	-
				221-2	125.6	◦ 공동건축지정 : 221-1	-
				221-3	196.6	◦ 공동건축지정 : 221-6	-
				221-6	61.2	◦ 공동건축지정 : 221-3	-
				221-7	1,691.9	-	-
				221-8	72	◦ 공동건축지정 : 221-9,-10,-11	-
				221-9	79	◦ 공동건축지정 : 221-8,-10,-11	-
				221-10	74.1	◦ 공동건축지정 : 221-8,-9,-11	-
				221-11	69.8	◦ 공동건축지정 : 221-8,-9,-10	-
				221-12	170.2	◦ 공동건축지정 : 221-13,-14	-
				221-13	194	◦ 공동건축지정 : 221-12,-14	-
				221-14	132.4	◦ 공동건축지정 : 221-12,-13	-
				221-16	101.9	◦ 공동건축지정 : 221-17,-18	-
	72	2,804.6	북아현동	221-17	72.1	◦ 공동건축지정 : 221-16,-18	-
				221-18	73.7	◦ 공동건축지정 : 221-16,-17	-
				238-1	711.1	-	-
				238-2	168.3	◦ 공동건축지정 : 238-4,-5,-14,-27,-28,-29	-
				238-4	70.4	◦ 공동건축지정 : 238-2,-5,-14,-27,-28,-29	-
				238-5	50.6	◦ 공동건축지정 : 238-2,-4,-14,-27,-28,-29	-
				238-14	316.4	◦ 공동건축지정 : 238-2,-4,-5,-27,-28,-29	-
				238-27	111.7	◦ 공동건축지정 : 238-2,-4,-5,-14,-28,-29	-
				238-28	24.2	◦ 공동건축지정 : 238-2,-4,-5,-14,-27,-29	-
				238-29	69.9	◦ 공동건축지정 : 238-2,-4,-5,-14,-27,-28	-
				238-6	60.8	◦ 공동건축지정 : 238-7,-8,-9,-10,-11,-34,-35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238-7	62.1	◦ 공동건축지정 : 238-6,-8,-9,-10,-11,-34,-35 ◦ 공동건축지정 : 238-12,-30,-31,-32,-33	-
				238-8	58.5	◦ 공동건축지정 : 238-6,-7,-9,-10,-11,-34,-35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238-9	34.1	◦ 공동건축지정 : 238-6,-7,-8,-10,-11,-34,-35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238-10	40	◦ 공동건축지정 : 238-6,-7,-8,-9,-11,-34,-35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238-11	39	◦ 공동건축지정 : 238-6,-7,-8,-9,-10,-34,-35 ◦ 공동건축지정 : 238-12,-30,-31,-32,-33	-
				238-34	36.7	◦ 공동건축지정 : 238-6,-7,-8,-9,-10,-11,-35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기정	73	2,944.6	북아현동	238-35	22.1	◦ 공동건축지정 : 238-6,-7,-8,-9,-10,-11,-34 ◦ 공동건축권장 : 238-12,-30,-31,-32,-33	-
				238-12	78	◦ 공동건축지정 : 238-31,-32,-33 ◦ 공동건축권장 : 238-6,-7,-8,-9,-10,-11,-30,-34,-35	-
				238-31	76.7	◦ 공동건축지정 : 238-12,-32,-33 ◦ 공동건축권장 : 238-6,-7,-8,-9,-10,-11,-30,-34,-35	-
				238-32	105.1	◦ 공동건축지정 : 238-12,-31,-33 ◦ 공동건축권장 : 238-6,-7,-8,-9,-10,-11,-30,-34,-35	-
				238-33	58.8	◦ 공동건축지정 : 238-12,-31,-32 ◦ 공동건축권장 : 238-6,-7,-8,-9,-10,-11,-30,-34,-35	-
				238-30	95.2	◦ 공동건축권장 : 238-6,-7,-8,-9,-10,-11,-12,-31,-32,-33,-34,-35	-
				238-15	74.1	◦ 공동건축지정 : 238-16,-17,-18,-19,-20,-21,-22,-23,-24,-25,-26	-
				238-16	88.3	◦ 공동건축지정 : 238-15,-17,-18,-19,-20,-21,-22,-23,-24,-25,-26	-
				238-17	168.3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8,-19,-20,-21,-22,-23,-24,-25,-26	-
				238-18	190.7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9,-20,-21,-22,-23,-24,-25,-26	-
				238-19	55.2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20,-21,-22,-23,-24,-25,-26	-
				238-20	80.3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1,-22,-23,-24,-25,-26	-
				238-21	76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2,-23,-24,-25,-26	-
				238-22	85.7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1,-23,-24,-25,-26	-
				238-23	79.2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1,-22,-24,-25,-26	-
				238-24	71.3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1,-22,-23,-25,-26	-
				238-25	112.9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1,-22,-23,-24,-26	-
				238-26	72.9	◦ 공동건축지정 : 238-15,-16,-17,-18,-19,-20,-21,-22,-23,-24,-25	-
				251-1	25.8	◦ 공동건축지정 : 251-2,-3,-21,-22,-23,-24,-25,-26,-27	-
				251-2	85	◦ 공동건축지정 : 251-1,-3,-21,-22,-23,-24,-25,-26,-27	-
				251-3	64.8	◦ 공동건축지정 : 251-1,-2,-21,-22,-23,-24,-25,-26,-27	-
				251-21	25.1	◦ 공동건축지정 : 251-1,-2,-3,-22,-23,-24,-25,-26,-27	-
				251-22	20.8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3,-24,-25,-26,-27	-
				251-23	28.1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2,-24,-25,-26,-27	-
				251-24	28.8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2,-23,-25,-26,-27	-
				251-25	21.2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2,-23,-24,-26,-27	-
				251-26	28.8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2,-23,-24,-25,-27	-
				251-27	26.4	◦ 공동건축지정 : 251-1,-2,-3,-21,-22,-23,-24,-25,-26	-
				251-4	232.4	◦ 공동건축지정 : 251-15,-18 ◦ 공동건축권장 : 251-6	-
				251-15	77	◦ 공동건축지정 : 251-14,-18 ◦ 공동건축권장 : 251-6	-
				251-18	22.8	◦ 공동건축지정 : 251-14,-15 ◦ 공동건축권장 : 251-6	-
				251-6	112.4	◦ 공동건축지정 : 251-4,-15,-18	-
				251.8	97.5	◦ 공동건축지정 : 251-9,-10,-11,-12,-13,-14	-
				251-9	77	◦ 공동건축지정 : 251-10,-11,-12,-13,-14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10	74.7	◦ 공동건축지정 : 251-9,-11,-12,-13,-14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11	65.8	◦ 공동건축지정 : 251-9,-10,-12,-13,-14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12	52.6	◦ 공동건축지정 : 251-9,-10,-11,-13,-14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13	97.5	◦ 공동건축지정 : 251-9,-10,-11,-12,-14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14	58.2	◦ 공동건축지정 : 251-9,-10,-11,-12,-13 ◦ 공동건축권장 : 251-8	-
				251-35	63.1	◦ 공동건축지정 : 251-36,-39,-40,-50,-107 ◦ 공동건축권장 : 251-37,-108	-

			251-36	62.5	◦ 공동건축지정 : 251-35, -39, -40, -50, -107 ◦ 공동건축권장 : 251-37, -108	-
			251-39	273.1	◦ 공동건축지정 : 251-35, -36, -40, -50, -107 ◦ 공동건축권장 : 251-37, -108	-
			251-40	138.2	◦ 공동건축지정 : 251-35, -36, -39, -50, -107 ◦ 공동건축권장 : 251-37, -108	-
			251-50	138.5	◦ 공동건축지정 : 251-35, -36, -39, -40, -107 ◦ 공동건축권장 : 251-37, -108	-
			251-107	26.5	◦ 공동건축지정 : 251-35, -36, -39, -40, -50 ◦ 공동건축권장 : 251-37, -108	-
			251-37	68.3	◦ 공동건축지정 : 251-108 ◦ 공동건축권장 : 251-35, -36, -39, -40, -50, -107	-
			251-108	17.6	◦ 공동건축지정 : 251-37 ◦ 공동건축권장 : 251-35, -36, -39, -40, -50, -107	-
			251-28	37.7	◦ 공동건축지정 : 251-29, -30, -31, -32, -33, -34, -41, -42, -43, -44, -45	-
			251-29	42	◦ 공동건축지정 : 251-28, -30, -31, -32, -33, -34, -41, -42, -43, -44, -45	-
			251-30	78.3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1, -32, -33, -34, -41, -42, -43, -44, -45	-
			251-31	50.6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2, -33, -34, -41, -42, -43, -44, -45	-
			251-32	84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3, -34, -41, -42, -43, -44, -45	-
			251-33	69.1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4, -41, -42, -43, -44, -45	-
			251-34	119.3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41, -42, -43, -44, -45	-
			251-41	72.4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34, -42, -43, -44, -45	-
			251-42	68.8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34, -41, -43, -44, -45	-
			251-43	86.3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34, -41, -42, -44, -45	-
			251-44	64.1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34, -41, -42, -43, -45	-
			251-45	61.5	◦ 공동건축지정 : 251-28, -29, -30, -31, -32, -33, -34, -41, -42, -43, -44	-

- 변경

구분	가구		필지		공동개발 면적(㎡)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변경	1	3,574.9	대현동	62-13	175.8	◦ 공동개발(지정) : 62-13 ⊕ 251-99	구청장방침 ('18.7.9. NO.13)
			북아현동	251-99	156.3		
				251-9	77.0	◦ 공동개발(지정) a : 251-9 ⊕ 251-10 ⊕ 251-11 ⊕ 251-12	동일소유자 (기 개발지) 건축불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251-10	74.7		
				251-11	65.8		
				251-12	52.6		
				251-8	97.5	◦ 공동개발(권장) : a ⊖ 251-8 ⊖ 251-13 ⊖ 251-14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13	97.5		
				251-14	58.2		
				251-4	232.4		
				251-6	112.4	◦ 공동개발(권장) : 251-4 ⊖ 251-6 ⊖ 251-15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15	77.0		
				251-1	25.8	◦ 공동개발(지정) b : 251-1 ⊕ 251-2 ⊕ 251-26	동일소유자
				251-2	85.0		
				251-26	28.8		
				251-18	22.8		
				251-21	25.1	◦ 공동개발(지정) c : 251-18 ⊕ 251-21 ⊕ 251-22	과소필지
				251-22	20.8		
				251-23	28.1	◦ 공동개발(지정) d : 251-23 ⊕ 251-24	동일소유자
				251-24	28.8		

변경	2	3,620.1	북아현동	251-25	21.2		◦ 공동개발(지정) e : 251-25 ⊕ 251-27 ◦ 공동개발(지정) : d ⊕ e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51-27	26.4			
				251-3	64.8		◦ 공동개발(권장) : b ⊖ c ⊖ (d ⊕ e) ⊖ 251-3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50	138.5	586.5	◦ 공동개발(지정) f : 251-50 ⊕ 251-107 ⊕ 251-108 ⊕ 251-36	동일소유자
				251-107	26.5			과소필지
				251-108	17.6			과소필지
				251-36	62.5			과소필지
				251-37	68.3		◦ 공동개발(지정) : g : 251-37 ⊕ 251-39 ◦ 공동개발(권장) : f ⊖ g	과소필지 및 맹지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39	273.1			
				251-33	69.1	530.9	◦ 공동개발(지정) h : 251-33 ⊕ 251-41 ⊕ 251-42	과소필지 및 부정형필지
				251-41	72.4			동일소유자
				251-42	68.8		◦ 공동개발(지정) i : 251-35 ⊕ 251-40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51-35	63.1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51-40	138.2		◦ 공동개발(권장) : h ⊖ i ⊖ 251-34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34	119.3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28	37.7	504.5	◦ 공동개발(지정) j : 251-28 ⊕ 251-29 ⊕ 251-45	동일소유자
				251-29	42.0			건축물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251-45	61.5		◦ 공동개발(지정) k : 251-30 ⊕ 251-44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51-30	78.3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51-44	64.1		◦ 공동개발(지정) l : 251-31 ⊕ 251-32 ⊕ 251-43 ◦ 공동개발(권장) : j ⊖ k ⊖ l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적정개발규모 유도
				251-31	50.6			
				251-32	84.0			
				251-43	86.3			
				251-7	298.2	298.2	-	개별필지
			북아현동	238-5	50.6	642.6	◦ 공동개발(지정) a : 238-5 ⊕ 238-7	동일소유자
				238-7	62.1		◦ 공동개발(지정) b : 238-9 ⊕ 238-10 ⊕ 238-11 ⊕ 238-34 ⊕ 238-35	동일소유자
				238-9	34.1			과소필지 및 세장형 필지
				238-10	40.0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11	39.0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34	36.7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35	22.1		◦ 공동개발(권장) : a ⊖ b ⊖ 238-2 ⊖ 238-4 ⊖ 238-6 ⊖ 238-8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2	168.3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4	70.4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6	60.8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8	58.5	711.1	-	개별필지
				238-1	711.1		-	개별필지
				238-12	78.0	589.3	◦ 공동개발(지정) c : 238-12 ⊕ 238-33 ⊕ 238-31 ⊕ 238-32	동일소유자 (238-12,33/ 238-31,32) 및 건축물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238-33	58.8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31	76.7		◦ 공동개발(권장) : c ⊖ 238-30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32	105.1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30	270.7	522.2	◦ 공동개발(지정) d : 238-14 ⊕ 238-27 ⊕ 238-28 ⊕ 238-29	동일소유자
				238-14	316.4			동일소유자
				238-27	111.7			동일소유자
				238-28	24.2			동일소유자
				238-29	69.9			동일소유자

				238-15	74.1	516.5	◦ 공동개발(지정) e : 238-15 ⊕ 238-16 ⊕ 238-26	과소필지 및 건축불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238-16	88.3			
				238-26	72.9			
				238-17	168.3			
				238-25	112.9	638.4	◦ 공동개발(지정) f : 238-17 ⊕ 238-25 ◦ 공동개발(권장) : e ⊖ f	건축불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적정개발규모 유도
				238-18	190.7			
				238-24	71.3			
				238-23	79.2			
				238-19	55.2			
				238-20	80.3			
				238-21	76			
				238-22	85.7			
변경	3	3,291.4	북아현동	221-12	170.2	496.6	◦ 공동개발(권장) : 221-12 ⊖ 221-13 ⊖ 221-14	적정개발규모 유도
				221-13	194.0			
				221-14	132.4			
				221-8	72.0	294.9	◦ 공동개발(권장) : 221-8 ⊖ 221-9 ⊖ 221-10 ⊖ 221-11	적정개발규모 유도
				221-9	79.0			
				221-10	74.1			
				221-11	69.8			
				221-6	61.2	1,743.1	◦ 공동개발(권장) : 221-6 ⊖ 221-7	적정개발규모 유도
				221-7	1,681.9			
				221-2	125.6	322.2	◦ 공동개발(권장) : 221-2 ⊖ 221-3	적정개발규모 유도
				221-3	196.6			
변경	4	3,291.4	북아현동	220-7	65.1	661.5	◦ 공동개발(지정) a : 220-7 ⊕ 220-21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21	77.7			
				220-8	63.5		◦ 공동개발(지정) b : 220-8 ⊕ 220-20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20	76.4			
				220-10	111.7		◦ 공동개발(지정) c : 220-10 ⊕ 220-12 ⊕ 220-15	동일소유자
				220-12	48.3			
				220-15	48.3		◦ 공동개발(권장) : a ⊖ b ⊖ c ⊖ 220-9 ⊖ 220-16	과소필지
				220-9	70.7			
				220-16	99.8	369.4	◦ 공동개발(지정) d : 220-5 ⊕ 220-6	과소필지 및 세장형 필지
				220-5	71.1			
				220-6	67.8		◦ 공동개발(지정) e : 220-23 ⊕ 220-25	동일소유자
				220-23	89.3			
				220-25	51.9		◦ 공동개발(지정) e ⊕ 220-24 ◦ 공동개발(권장) : d ⊖ e	과소필지 및 세장형 필지, 적정개발규모 유도
				220-24	89.3			
				220-1	83.6	705.0	◦ 공동개발(지정) f : 220-1 ⊕ 220-2 ⊕ 220-3 ⊕ 220-4 ⊕ 220-26	동일소유자
				220-2	86.9			
				220-3	47.9			
				220-4	46.3			
				220-26	132.9		◦ 공동개발(지정) g : 220-29 ⊕ 220-30 ⊕ 220-31	동일소유자
				220-29	62.1			
				220-30	44.3			
				220-31	43.3			
				220-28	157.7	519.3	◦ 공동개발(권장) : f ⊖ g ⊖ 220-28	과소필지
				220-14	307.0			
				220-61	63.2			

변경	5	3,465.9	북아현동	220-43	149.1		◦ 공동개발(권장) : h ⊖ 220-43	적정개발규모 유도
				220-18	57.5	436.7	◦ 공동개발(지정) i : 220-18 ⊕ 220-42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42	68.8			
				220-19	75.7		◦ 공동개발(지정) j : 220-19 ⊕ 220-41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41	62.9			
				220-22	108.8		◦ 공동개발(지정) k : 220-22 ⊕ 220-40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40	63.0		◦ 공동개발(권장) : i ⊖ j ⊖ k	
				220-38	95.9	318.0	◦ 공동개발(지정) l : 220-38 ⊕ 220-39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39	45.7			
				220-36	176.4		◦ 공동개발(권장) : l ⊖ 220-36	적정개발규모 유도
				220-34	68.2	281.5	◦ 공동개발(지정) m : 220-34 ⊕ 220-35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220-35	89.1			
				220-32	124.2		◦ 공동개발(권장) : m ⊖ 220-32	적정개발규모 유도
			북아현동	156-10	194.7	536.3	◦ 공동개발(지정) a : 156-10 ⊕ 156-11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11	65.8			
				156-12	67.1		◦ 공동개발(지정) b : 156-12 ⊕ 156-13(동일소유자) c : 156-14 ⊕ 156-15 (기 공동개발지) ◦ 공동개발(권장) : a ⊖ b ⊖ c	동일소유자,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13	65.5			
				156-14	82.0			
				156-15	61.2			
				156-16	52.2	350.7	◦ 공동개발(지정) d : 156-16 ⊕ 156-17 ⊕ 156-18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17	59.8			
				156-18	57.5			
				156-7	77.7		◦ 공동개발(권장) d ⊖ 156-7 ⊖ 156-8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8	103.5			
				156-4	72.4	573.6	◦ 공동개발(지정) e : 156-4 ⊕ 156-24	동일소유자
				156-24	56.5			
				156-20	175.4		◦ 공동개발(지정) f : 156-20 ⊕ 156-40 ⊕ 156-52 ⊕ 156-53	동일소유자
				156-40	43.6	504.8		
				156-52	16.4		◦ 공동개발(지정) g : 156-21 ⊕ 156-51 ◦ 공동개발(권장) : e ⊖ f ⊖ g	동일소유자
				156-53	3.3			
				156-21	182.5			
				156-51	23.5			
				156-2	84.6		◦ 공동개발(지정) h : 156-2 ⊕ 156-26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26	56.5		◦ 공동개발(지정) i : 156-3 ⊕ 156-25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3	55.9		◦ 공동개발(지정) j : 156-27 ⊕ 156-39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25	55.2		◦ 공동개발(권장) h ⊖ i ⊖ j ⊖ 156-1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27	78.7	362.5		
				156-39	64.1			
				156-1	109.8			
				156-36	116.6	413.5	◦ 공동개발(지정) k : 156-36 ⊕ 156-37	동일소유자
				156-37	89.9		◦ 공동개발(권장) : k ⊖ 156-35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35	156.0			
				156-22	120.0	425.3	◦ 공동개발(지정) l : 156-33 ⊕ 156-22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33	59.5		◦ 공동개발(지정) m : 156-19 ⊕ 156-34 ◦ 공동개발(권장) : l ⊖ m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34	121.6			
				156-19	112.4	425.3	◦ 공동개발(지정) n : 156-23 ⊕ 156-32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필지,
				156-23	81.0			
				156-32	105.9		◦ 공동개발(지정) o : 156-30 ⊕ 156-31 ◦ 공동개발(권장) : n ⊖ o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6-30	27.0			
				156-31	211.4			

변경	6	2,448	북아현동	156-28	150.0	299.2	◦ 공동개발(권장) : 156-28 ⊖ 156-29	적정개발규모 유도
				156-29	149.2			
				154-26	96.2	403.6	◦ 공동개발(권장) : 154-26 ⊖ 154-28 ⊖ 154-29 ⊖ 154-30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28	94.2			
				154-29	106.1			
				154-30	107.1			
				154-1	95.2	601.0	◦ 공동개발(지정) a : 154-1 ⊕ 154-34 ⊕ 154-35 ⊕ 154-36	동일소유자
				154-34	69.4			
				154-35	61.2			
				154-36	103.8			
				154-31	80.7	645.2	◦ 공동개발(권장) : a ⊖ 154-31 ⊖ 154-32 ⊖ 154-33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32	83.3			
				154-33	107.4			
				154-14	36.0			
				154-17	81.0	645.2	◦ 공동개발(지정) b : 154-14 ⊕ 154-17 ⊕ 154-18	과소필지 및 맹지
				154-18	14.9			
				154-16	97.5		◦ 공동개발(권장) : b ⊖ 154-16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19	15.4			
				154-20	24.5		◦ 공동개발(지정) c : 154-19 ⊕ 154-20 ⊕ 154-22	동일소유자
				154-22	81.3			
				154-23	114.7		◦ 공동개발(권장) : c ⊖ 154-23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21	103.5			
				154-24	39.0		◦ 공동개발(지정) d : 154-21 ⊕ 154-24 ⊕ 154-25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25	37.4			
				154-2	76.4	798.2	◦ 공동개발(권장) : a ⊖ 154-31 ⊖ 154-32 ⊖ 154-33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3	55.9			
				154-4	46.7		◦ 공동개발(지정) e : 154-2 ⊕ 154-3	동일소유자
				154-5	49.0			
				154-7	27.4		◦ 공동개발(지정) f : 154-5 ⊕ 154-7 ⊕ 154-8	동일소유자
				154-8	78.0			
				154-9	124.6		◦ 공동개발(지정) f ⊕ 154-9	과소필지 및 단독개발 불가필지
				154-6	33.0			
				154-12	33.1		◦ 공동개발(지정) g : 154-6 ⊕ 154-12 ⊕ 154-11 ⊕ 154-13 ⊕ 154-15	동일소유자(154-6,12/154-11,13,15) 및 건축 불가능한 맹지형필지 (차량진출입불가),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11	131.6			
				154-13	36.7		◦ 공동개발(권장) : (e ⊕ 154-4) ⊖ (f ⊕ 154-9) ⊖ g	적정개발규모 유도
				154-15	105.8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불허(전층)	불허(전층)
공동사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관장외발매소, 마관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가목의 장례식장
A (준주거지역)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용도지역지구 해당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나목의 1층 금융업소 (무인점포 제외)
D (근린상업지역)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미관지구 불허용도 - 용도지역지구 해당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소 - 숙박시설(단, 호텔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나목의 1층 금융업소 (무인점포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제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은 불허(관련규정 개정 시 그에 따름)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허용도 재설정 및 미관저해시설 및 유해 용도의 입지 규제	지역여건 변화(북아현·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재개발사업 3개소 완료, 아현 고가도로 철거 등)에 따른 지역생활환경 저해 방지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 불허
지상1층 전면불허용도 금융업소(무인점포 제외)	가로활성화를 위해 폐장이 이른 금융업소는 지상1층 전면에 설치를 불허하여 중심기능 입지를 유도

2) 권장·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권장·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㉔ (전층)	웨딩관련 판매시설	1	- 신촌로변 (지상1층) - 이면도로 (전층)	1~3BL
		2	아현역세권 (전층)	4~6BL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의 웨딩관련 의류소매점(웨딩관련 용도란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에 한함), 나목의 휴게음식점(카페 등),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자목의 결혼상당소, 소개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목의 사진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의 집회장(예식장), 라목의 전시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일반여행업(여행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의 소매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오피스텔 제외)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 전층 (신촌로변 전면부, 이면부) 권장용도 계획 수립 - 전층 웨딩·뷰티관련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이용원, 미용원, 휴게음식점(카페 등), 여행사 권장	중심지 육성 및 지역특화를 위해 가로활성화용도 및 웨딩·뷰티관련시설 용도 도입(「서울시 2030 생활권계획」 관리방안 반영) 및 배후 지원기능 강화
- 전층 권장용도 계획 수립 - 전구역 업무, 상업 기능 유도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배후주거지역 지역생활서비스 기능 강화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권장

3) 건축물의 밀도(건폐율·용적률) 결정 조서 (변경)

(1)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250% 이하	350% 이하	400% 이하	용도지역 변경지역 (2005.09.29. 변경)
	30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기존 근린상업지역

※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건축물기부채납 가능)에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을 적용 : 기준(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및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단일 용도지역으로 통일된 경우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치 적용

4) 건축물의 높이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최고높이계획(m)	비고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60m	-
근린상업지역	최고높이 80m	-

5)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변경)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변경)

■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부	3m	3m
	이면부	2m	1m

※ 도시계획법 제정 이전에 지정된 지정제한건축선은 폐지하고 건축한계선으로 명칭 변경됨

■ 건축물의 배치 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 용 목 표	적 용 기 준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신촌로)	- 도로기능 향상 및 보행공간 확보 -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보도제공 및 녹지조성)	3m	신촌로
	이면도로변, 보차혼용도로 설치지역	- 보행공간 확보 -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보도제공 및 녹지조성)	1m	이면부

■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이면부 건축한계선 변경(2m → 1m)	대규모 획지계획 → 개별필지의 공동개발 지정, 권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별규모가 축소되어 건축한계선 축소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변경)

■ 기 정

구 분		적 용 목 표	비 고
건축물 형 태	탐상형	- 간선 가각부 및 간선도로변은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탐상형 건축 - 주거용도의 탐상형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형태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 - 비주거용도의 탐상형 건축물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이 40%이하로 건축	-
	저층부 형 태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투시벽 설치 : 폭 20m 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서터 설치 : 12m 이상 도로변의 1층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등으로 차폐	
건축물 외 관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이용 권장 - 층에 차양시설의 설치 및 창문 부착 광고물을 금지	
		1층은 소규모 점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1층 점포의 입면 폭은 9m 이하로 할 것을 권장 - 페인트 등의 도장마감 시 주민협의체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색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건축물에 건축적인 광고물(건축물의 당해 광고물의 설치 벽면 면적의 1/5이상의 대형 광고물,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와 다른 별도의 광고물 등)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협의체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광고물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 타 사 항	옥 외 광고물	- 가로형 간판 - 개수 : 1층은 점포당 1개 이하, 2층은 층별 1개 이하로 제한 - 크기 : 가로는 창호폭 100% 이하, 세로는 80cm 이하 또는 상·하부 사이 높이 x 3/5 이하, 건물 내에서 일치 권장 - 위치 : 해당 점포 상부면의 중심 - 벽면에서 돌출 폭 : 최대 30cm 이내, 한 건물에서는 옥외 광고물 바탕면의 두께 일치 권장 - 세로형 간판	

		- 개수 : 점포 당 1개 - 크기 * 1층 : 가로 돌출폭 이하, 간판면적 0.36㎡ 이하 * 2층 이상 : 가로는 돌출폭 이하, 세로는 층높이 이하 - 위치 : 1층은 점포의 정면 좌측 상부, 최고 G.L에서 3m 위치 - 벽면에서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80cm 기준선 준수	
	야간조명	◦ 투시형 벽면 설치 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변경

구분		적용목표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적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 시 투시형을 사용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 기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불가 ◦ 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구역전체 (규제)
건축물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구역전체 (권장)
	측면공지 차폐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담장, 문 등으로 차폐 ◦ 이때,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및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야간조명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시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설치 미술 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 설비의 노출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 불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 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금지	
	탑상 건축물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신촌로변 권장 ◦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장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고,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고 그 부분의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개선방안 등 관련규정 준수	구역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 처리	◦ 담장 허물기 권장(가급적 담장설치 자제) - 담장 설치 시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안전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울타리 조성 또는 투시형 헨스를 설치하고 차폐 식재를 권장 ◦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 지하주차장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부에 최소 20cm~30cm 정도의 선형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벽면녹화를 권장	구역전체 (권장)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건축물 형태·색채 계획 등의 변경	◦ 북아현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2020.5.26.)' 등을 고려하여, 최근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추세에 맞게 기존 계획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 내 공지	간선부 (신촌로변)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대지(1~3m)의 가로 보행환경 제고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이면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공개공지	-	◦ 지역 내 보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보 ◦ 1개소 위치지정 및 소공원 형태 ◦ 대지면적 1,500㎡ 이상 개발 시 10%이상
	섬지형공지	-	◦ 보차혼용 도로 주변 ◦ 신촌로변 및 주요결절부 보행환경 개선 ◦ 대지면적 500㎡ 이상 개발 시 5%이상
대지 내 통로	보차혼용 도로 폭원 4m (3개소)	폭원 4m (4개소)	◦ 보차혼용도로 연결성 및 이면부의 원활한 차량, 보행자의 소통을 위하여 기존 대지 내 현황도로 추가 지정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목표	적용기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5m	신촌로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2m	이면도로
통로	◦ 이면 필지의 접근성 향상과 전면도로에서의 진출입 해소를 위하여 보차혼용도로 계획 - 폭원: 4m	폭원 4m	-
	◦ 획지 내 유일한 현황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 시 그 통로를 유지하여야 함	-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목표	적용기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건축한계선 3m	신촌로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건축한계선 1m	이면도로
공개공지	◦ 가로 보행환경 개선	건축법 상	소공원 형태

통로	위치	◦ 공개공지 위치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가각부)	설치 대상 필지	(위치준수표기)
	공개공지의 조성	◦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공개공지 의무면적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 여건 및 차량진출입을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현황통로	◦ 현황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 시 그 통로를 유지하여야 함	-	-

※ 공개공지 및 쌈지형 공지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의무 확보면적 포함하여 산정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 전면공지 폭원 변경(이면도로변 2m → 1m)	◦ 대규모 획지계획 → 개별필지의 공동개발 지정, 권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별 규모가 축소 되어 건축한계선 축소에 따른 전면공지 변경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 신설	◦ 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대지면적 1,500㎡ 이상 개발 시 10% 이상 공개공지 설치 ◦ 신촌로변 및 주요결절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지면적 500㎡ 이상 개발 시 5%이상 쌈지형공지 설치
◦ 보차혼용통로 추가(1개소) 지정	◦ 현황 상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대지 내 건축선 후퇴를 통해 보차혼용통로 공간 확보 대상 지역을 1개소 추가하여 이면부의 차량 및 보도의 접근성 향상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적용목표	적용기준	적용대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유지 ◦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면도로에서 차량 접근이 가능한 필지는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을 원칙으로 함	◦ 주간선가도에서의 차량출입 원칙적 금지	신촌로	-

※ 공동개발 방식의 변경 또는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당해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음

(3)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이면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대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 ◦ 신촌로변, 아현역세권 별 권장용도 준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참고 ※ 불임도면 참고

4. 인센티브 운영계획 결정(변경)

■ 기정

(1) 친환경 인센티브(기정)

완화항목			세부계획 기준	비고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대지면적) x 0.3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적용 시

※ 각종 구조물들로 인한 경관 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옥상부에서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 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2) 계획유도 인센티브(기정)

완화 항목			세부계획 기준	비고
획 지	획지단위 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x 0.2	◦ 2개 이상의 개별필지를 획지계획수립으로 획지선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정한 경우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15	◦ 2개 이상의 획지에 대하여 공동건축 권장을 할 경우
	블록단위 개발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2	◦ 신촌로, 양화로변에 한함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x 0.2	◦ 총 연면적의 30% 이상 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	기준용적률 x 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 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 피로티구조 : α = 0.5 ◦ 개방형구조 : α = 1.0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대지면적)	◦ 건축한계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의 면적으로 산정 ◦ 미관지구 내 제공의무면적 제외
대지 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피로티구조 : α = 0.5 ◦ 개방형구조 : α = 1.0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지정 외에 추가로 조성 시는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서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α	◦ 연세로변 : α = 0.05 ◦ 연세대주변, 명물거리변, 이화여대주변 α = 1.0
	건축물 입면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α	◦ 연세로변 : α = 0.05 ◦ 연세대주변, 명물거리변, 이화여대주변 α = 1.0

※ 획지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 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대지 내 공지 및 보행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예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등)

■ 변경

(1)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방향

1. 용적률 인센티브는 크게 친환경, 계획유도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친환경 계획 준수 시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 수시 (70%이내)	공동개발(특별지정)시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의 100분의 30이상, 계획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불가. 반면,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하다. 단, 연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주)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총 인센티브량의 30/1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주) 소규모건축물 기준 500㎡미만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임

(2) 공통사항(친환경 인센티브)(변경)

완 화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친환경 인센 티브 항목	환경 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준수 시	최우수(그린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우수(그린2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우량(그린3등급): 기준용적률 x 0.0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준수 시	에너지효율1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효율2등급: 기준용적률 x 0.03 에너지효율3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준수 시	신재생에너지1등급: 기준용적률 x 0.06 신재생에너지2등급: 기준용적률 x 0.05 신재생에너지3등급: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4등급: 기준용적률 x 0.03 신재생에너지5등급: 기준용적률 x 0.02	
		중수도 시설 설치 시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04	- 총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 설치 시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준수 시	기준용적률x(녹화면적/대지면적) x 0.4	- 법적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 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준수 시	기준용적률x(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 설치시

- ※ 환경친화에너지효율 항목 중 법정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
- ※ 소규모건축물은 친환경용적률 인센티브(30%이상) 적용 없이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대체가능(소규모건축물: 건축허가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건축물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 ※ 구역 현황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등에 따라 친환경인센티브 계획 및 세부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정가능(이 경우 심의 전에 지구단위계획 목적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 결정권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신재생에너지 항목의 등급판정 대체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용(서고시 제2017-352호 (2017.9.28.))

(3) 계획유도 인센티브(준주거지역)(변경)

완화 항목			세부계획 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a	2필지 a=0.07 3필지 a=0.08 4필지 이상 a=0.10
	공동개발 (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a	2필지 a=0.06 3필지 a=0.07 4필지 이상 a=0.08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지상1층)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 / 건축면적) x 0.5	- 건축면적의 50% 이상 준수 시(주차장 제외) 1~3BL 적용
	권장용도 (전층)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 / 층 및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x 1.15	- 면적의 20% 이상 준수 시(주차장 제외) 1~5BL 적용(단, 1~3BL은 1층 제외)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x a	a= 0.07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썬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의무면적)/대지면적] x a	a= 0.07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보차혼용 도로	준수 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5	a= 0.07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 ※ 지정, 권장이 없는 자율적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권장) 요율 값 적용
- ※ 건축한계선,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는 인센티브 완화항목에서 제외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100%임
- ※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건축물기부채납 가능)에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을 적용 : 기준(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름
- ※ 허용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보차혼용 통로조성 시 등)
-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민간시행지침 참고)

(4) 계획유도 인센티브(근린상업지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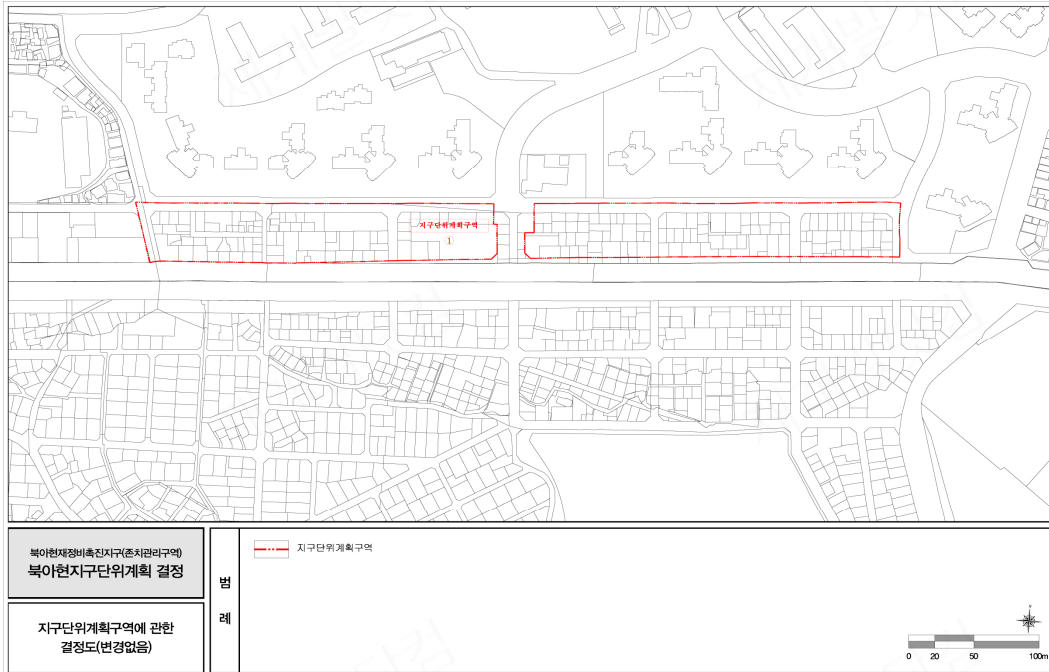
원화 항목		세부계획 기준		비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alpha=0.08$ ◦ 3필지 $\alpha=0.10$ ◦ 4필지 이상 $\alpha=0.12$
	공동개발(권장)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alpha=0.07$ ◦ 3필지 $\alpha=0.08$ ◦ 4필지 이상 $\alpha=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전층)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times 1.25$	◦ 연면적의 20% 이상 준수 시(주차장 제외)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0.08$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alpha=0.08$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보차혼용 통로	준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 대지면적) $\times 0.5$	◦ $\alpha=0.08$ (필로티형 조성시 1/2값 적용)

- ※ 지정, 권장이 없는 자율적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권장) 요율 값 적용
- ※ 건축한계선,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는 인센티브 원화항목에서 제외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은 200%임
- ※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건축물기부채납 가능)에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01.16.)」을 적용 : 기준(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름
- ※ 허용용적률 산출: 기준용적률 + Σ (각 항목별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조성 시 등)
- ※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의 10%이상(지상부)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민간시행지침 참고)
-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전체연면적의 20%이상(지상부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규정 준수하여 건축물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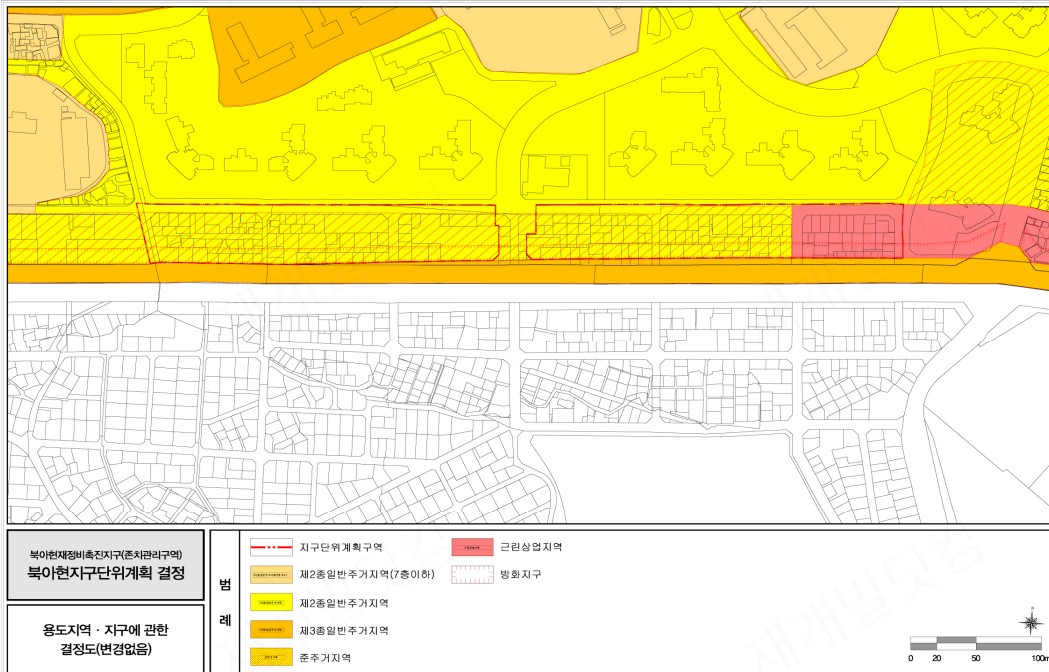
VI. 관계 도면은 붙임 참조(그 외 세부 관계 내용 및 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VI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4) 및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827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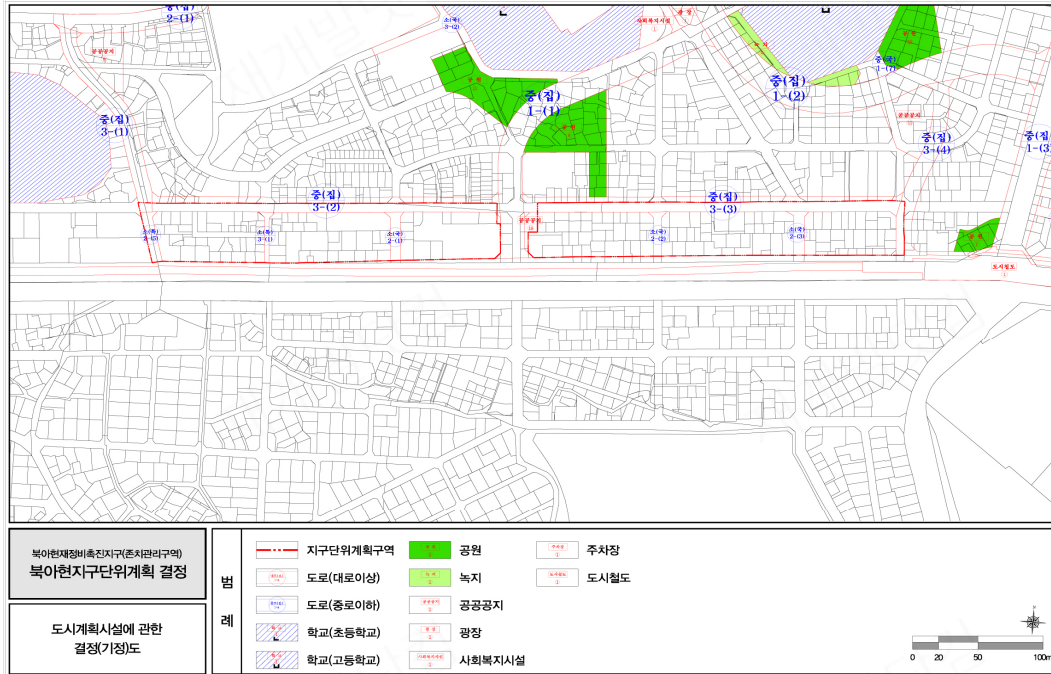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